친환경축산직불

세부사업명	친환경농업직불				세목	민간	경상보조				
내역사업명	친환경축산직불				예산 (백만원		1,585				
사업목적	○ 친환경축산 설 친환경축산으										
사업 주요내용	_	○ 신청일 현재 HACCP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(유기)을 받은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									
국고보조 근거법령	○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3조의2~제23조의8										
지원자격 및 요건	당해연도 기준 - 동일 농장에	○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당해연도 기간 중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-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									
지원한도	○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: 3천만원 - 「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(지정서 발급)은 보조금 지원액의 20%를 가산하여 지급하되, 지정기간이 보조금 지급기간('19.11. 1.~'20.10.31.) 보다 짧을 경우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%를 가산함(보조금 지급 시점에 지정이 유효할 필요는 없음) *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										
재원구성 (%)	국고 10	이 지방비	-	융자	-	자부담	-				
연도별 재정투입 계획	구 분 합 계 국 고	2017년 91,975 91,975	2018년 17,153 17,153	1	019년 5,665 5,665	(단위:백만원) 2020년 1,585 1,585					
담당	당기관	담당	상과	담당자		연락처					
농림축	·산식품부	축산환경	경자원 과	과 장 박홍식 사무관 남기헌 주무관 김소연		044-201-2351 044-201-2352 044-201-2354					
국립농산	물품질관리원				사무관 최동철 (9-4071 9-4072 9-4079				
친환경 단	민간인증기관			인증딤							
신청시기	매년 별도 공지			사업시학	행기관	농산물품	질관리원				
관련자료	친환경축산직불사업 시행지침서 참조										

I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○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9조 에 따른 친환경축산물(유기)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-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,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(이하 "보조금"이라 한다)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
 - * HACCP 농장인증의 경우 업종이 '가축사육업'이어야 한다.
-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

3. 지원기준 및 지급기간 산출방법

- 지원기준
-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 간 지급 (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)
- 지급기간 산출방법
-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5년간만 지급
-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5년간만 지급
-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
- 가족이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
 - * 다만, 가족일 경우라도 개별적으로 친환경인증 및 HACCP인증을 받고 독립 축사를 관리 • 운영시 각각 보조금 지급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○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

5.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

- 자금재원 : *농특회계(농특세 사업계정)*
- 지원형태 : 국고 보조 100%
- 지급대상 기간 : '19. 11. 1. ~ '20. 10. 31.
- HACCP 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지급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내역서(정산서, 판매내역서 등)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 - * 다만, 근거자료에는 친환경인증 여부를 알 수 있는 문자(유기인증)나 인증도형 표시가 있어야 함
-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(농촌진흥청,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)를 제출하여야 함
 - * 종축, 종란(계란, 오리알, 메추리알)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
- 0 지급단가
- 한 우 : 유기 170.000원/마리
 - * 육우는 한우 지급단가 보다 50% 감액 지급
- 젖 소(우유) : 유기 50원/L(우유 1 l 는 1.03kg임)
- 돼 지 : 유기 16.000위/마리
- 산란계(계란) : 유기 10원/개
 - * 다만, 출하량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음. ·산식 : {(인증 마리수 × 20개 × 단가 × 개월 수) - (입증량 × 단가)} × 0.5
- 육 계: 유기 200원/마리
 - * 토종닭은 육계 지급단가 보다 30% 증액 지급
- 오 리 : 유기 400위/마리
- 오리알 : 유기 20위/개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: 3천만원
- 「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(지정서 발급)은 보조금 지원액의 20%를 가산하여 지급하되, 지정기간이 보조금 지급기간('19.11.1.~'20.10.31.) 보다 짧을 경우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%를 가산함(보조금 지급 시점에 지정이 유효할 필요는 없음)
 - *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

○ 지급 방법

- '19. 11. 1.부터 '20. 10. 31.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'20. 12월 지급
 - * 다만, 산란계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(1개월 미만은 제외)
- 신청기간 이후 인증종류가 변경될 경우에도 출하된 인증종류에 따라 지급 (무항생제에서 유기로 변경된 경우만 해당)
-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당해연도 기간 중에 친환경 및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인증을 연장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당해연도에 종료된 경우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
 - * 보조금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은 유효하나 당해연도 기간(사업신청일로부터 지급대상기간 종료 시까지) 중에 인증 유효기간이 연속되지 못하고 인증기간의 공백이 생긴 경우에도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
 - ** 단, 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으나,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기간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
-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

Ⅱ / 사업추진체계

1.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

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(유기) 축산물의 생산·판매실적을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관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세 부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
2. 사업신청단계
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홈페이지 공고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전체 농업인에게 개별 통보 등 홍보 실시('20. 1~2월)
- 사업신청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장소재지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('20. 3. 2. ~ 3. 20.)
- 신청서 양식 : 별지 서식 참조
- [별지 제1호서식]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
- 신청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 :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(사무소장) 또는 민간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

*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참조

3. 사업자 선정단계

가. 사업대상자 선정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

- 신청 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
 - ①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
 - ② 친환경인증과 HACCP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 (두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함)
 - ③ '②'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
 - ④ '②'와 '③'이 모두 같은 경우 사육규모가 큰 농가

-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기자로 선정·관리
- 불용예산 발생 시 사업대기자 중에서 추가 선정
- 사업대기자 중 위의 사업대상자 선정순위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

사업대상자 선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('20. 4. 5.까지)

선정결과를 농림축산 식품부와 관련기관에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('20.4.14.까지)

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선정결과 통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('20.4.28.까지)

- 통지양식: [별지 제2호서식]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대상자(사업대기자 포함)로 선정된 인증사업자에 대해 인증 교육을 실시하고, 인증사업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함.
 - * 친환경축산직불 교육·홍보 사업(친환경인증기관협회 운영)을 활용하여 교육 추진

나. 신청내용 변경

- 변경대상
- (사업대상자 변경)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, 농지(축사)의 매도·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
 - * 사업대상 축사(농장)의 경영주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.
- (인증기관)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
- (농지현황) 사업장소재지의 주소(지번)변경, 인증품목 축소, 필지수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에 기재된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
 - * 인증대상자,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.
- 변경신청 기간 : 인증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
- 신청방법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·사무소에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[별지 제3호서식]의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 제출
 - * 변경신고서에는 '인증서 사본 등 승계관련 서류'를 첨부하여 제출

4. 이행점검 단계
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·사무소 및 민간인증기관에서는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9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축산업 이행여부 및 인증변동 사항 유무 등을 확인
- 이행점검 요청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→ 인증기관(지원·사무소 포함))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본원)은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인증기관(HACCP 및 친환경 인증기관)에 통보하여 이행점검을 요청('20, 4, 28,까지)
 - * 민간인증기관의 이행점검과는 별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선정된 사업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행점검 실시
- 이행점검 기간 : '19.11. 1. ~ '20.10.31.(1년간)
- 점검내용 : 인증번호, 인증농장·축종 등 일치여부, 인증기준 준수 여부(현장조사), 농업경영체등록 여부, 중복신청 여부 등
- 인증기관에서는 「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」 (농관원 고시) 별표5(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)에 따라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
- 점검결과 통보(인증기관 →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
-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('20.11.10.까지)
 - * 점검결과는 Agrix 시스템(인증기관에서 직접 입력)을 통해서 제출

5.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

가.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

-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농업인은 거래내역서(정산서, 세금계산서 등) 등 생산·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보조금을 신청('20.11.1.~11.10.)
- 신청서 양식 : [별지 제4호서식] 친환경축산보조금 지원 자금 신청서
 - *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대상자의 자금 신청결과 보조금의 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업대기자 중에서 추가 지급대상자를 선정·통보하고, 해당 지원·사무소로 세금계산서 등 생산·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
 - ** 보조금 신청 기간 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
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이 제출한 이행점검 결과와 자체 점검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('20.11.17.까지)
 - 인증취소, 인증기간만료, 신청포기, 사업장소재지 및 인증품목 불일치 등 부적격 자 제외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가에서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, 자격요건 및 생산·판 매실적 확인('20.11.13.~11.30.)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생산·판매실적 확인 결과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('20.12.8.까지)

나.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

-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사업비 배정('20.12.15.까지)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농가에게 보조금 지급('20.12.15.까지)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비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지급대상 기간 내 입증된 생산·판매 실적에 대한 보조금 지급

6. 자금집행 후 관리단계(제재)

- 당해연도 기간 중에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, 보조금 신청자가 「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포기한 날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.
- 인증기관은 이행점검 종료(10.31.) 후에도 보조금 지급 시까지 지급대상자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통보
- 농업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하고, 향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
7. 이행점검 등 전(全)단계 협조사항

○ 농림축산검역본부,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

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

접수번호				접	너수일				처리기간	60일
	성	명				주민	등록번호			
신 청 인	0	0				자 택 전 화				
	주	소				휴 대 전 화				
	'	<u> </u>				e-mail				
	농 정	낭 명				사업지	ト등록번호			
	농장전화					성 명				
농장현황	Fax					대 표	생년월일			
	설 립			년	월 일	자	전화번호			
크린고	구성	원수 			명		e-mail			
친환경 최초 인증 (인증번호	일				ACCP 인증일			친환경축산보조금 수급횟수		
 축 종	인증		농	장 소	재 지		사육	인증	예상출하량	예상금액
<u> </u>	종류 사		• 구	읍•면	리・동	지번	두수	두수	(단위)	(천원)
합 계										
입금계좌	(은행명) (예금주) (계좌번호)									
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」제23조의5와 같은 영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며,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(동의하는 경우 네모(□) 안에 ✔표시)합니다. □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・이용에 동의합니다.										
									년	월 일
국립농?	산물품 질관	바리워 장	귀하				신청인		(서명	또는 날인)
1101		- 120								
1. 안전관리인증농장(HACCP) 인증서 사본 1부 구비서류 2.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없음 규칙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										
					처 리 집	절 차				
신청서 직	성	→	집	설 수 처	→	적정 여	부 검토 및 혹	→	대상자 선	정 통보
						처 리 기 (국립농산물품				

	친혼	찬경콕	흑산	보조	금 지	급대	심	상자 선	선정통	통지서	
	성	명				생 년	크	월 일			
신 청 인	0					자틱	택	전 화			
	주	소				휴 [ᅫ	전 화			
	ı					e-	-ma	ail			
	농 장	· 명				사업지	나듣	등록번호			
농장현황	농장건	당전화					샹	성 명			
	Fax				대 표	싣	병년월일				
	설 립 일		년 월		월 일	<u>ㅠ</u> 자	잔	拉화번호			
	구성원수		명				(e-mail			
축 종	인증		농 장 소 재 지					사육	인증	예 상 출하량	예 상 금 액
7 0	종류	시・군	- 구	읍•면	리・동	지번	<u> </u>	두수 두수	두수	(단위)	ㅁ ㅋ (천원)
합 계											
· -L-	~!=!! T ! 7 !	7 4 71	— ап	II	-		~ II			1051 -17	-11 41 -1-1

※ 향후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지급대상 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인증을 연장하여야 합니다. 아울러, 사업대상자・ 인증기관・인증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」제23조의6제1항과 같은 영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

직인

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		접수일			처리기간	00.01	
B102			812			Nane	30일	
신 청 인	성 명			주민등	-			
				자 택				
	주 소			휴 대 e-ma				
111 71 11 21	/)							
변경사항		상사, ()인증기관, (
	구 분		당 초		변	경	변경일자	
-	성	명						
사 업	주민(법인)등	등록번호 -						
대 상 자	주 :	소						
	전화번	호						
인증기관	인증기-	관						
인당기관	인증번	호						
0.7.7.3	인증종.	류						
인증종류	인증번	호						
	농지(축사)주소						
농지현황	인증품	목						
	사육두	수						
	 대상자, 인증기	 기관 등	변경에 따른 신청·	 농지 변경내	 용은 별지로 ³	 작성 가능		
입금계좌	(은행명)		(예금주)		(계좌번호)			
치 화겨 추기		내요(사	 업대상자, 인증기;	과 이즈조트	 로 노지혀화)(기 벼겨되어으드	 일 시고하며	
			급의 8기, 근8기 인정보를 아래와					
안에 ✓표시					12 % " 0		()	
□ 보조금	지금과 과려	하여 상기	기 개인정보의 수집	I • 이용에 ·	동의한니다			
			기 개인정보의 제공					
						년	월 일	
				٨	신청인	(서명	또는 날인)	
국립농선	上물품 질관리원	원장 귀히	-	L	- 0 L	(118	TC 2C/	
			(P) 인증서 사본 1부	1 오기시프 드	이 교니 . 피의에	고하 버르 지해	수수료	
구비서류	2.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							
	3. 사업대상자	승계 관련	서류(사업대상자 변경					
			처리	절 차				
신고서 직	→	7	접 수 처 →		실 확인 및 선정 검토	→ 대상자 신	선정 통보	
신청인			리 기 관 산물품질관리원)	처 리	_ 이 관 기 관 물품질관리원)	처 리 (국립농산물		

친환경축산보조금 지원 자금 신청서

접수번호				젙	로 구입 업수일				처리기간	60일
	٨-١	D3				주민	등록번호			
신 청 인	성	명				자	택 전 화			
신 성 인	주	소				휴 [대 전 화			
		-				е	-mail			
	농 징	명 명				사업지	가등록번호			
	농장점	전화					성 명			
농장현황	Fa	Х				대 표	생년월일			
	설 립	일		년	월 일	자	전화번호			
	구성원수				명		e-mail			
축 종	인증 종류			장 소 읍 • 면	재 지 리·동	TIHJ	사육 두수	인증 두수	출하량 (단위)	금액 (천원)
	0 TI	시・正	• —	日・七	디 ' 등	지번		TI	(271)	(24)
합 계										
입금계좌	입금계좌 ^(은행명) (예금주)							년호)	1	
<i>「농산물의</i> 지원 자금을						_			같이 친환경 인정보를 0	
처리하는 것	에 동의(동의하는	: 경우	은 네모(□]) 안에 🗸	´표시) ē	납니다.			
							에 동의합니	다.		
□ 보조금	지급과	관련하여	상기	개인성년	보의 제공	에 농의	합니다.		년	월 일
							신청인			물 글 또는 날인)
국립농선	上물품 질굔	·리원장	귀하						(10	·
구비서류	구비서류 거래내역서(정산서, 세금계산서 등) 등 생산·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없음									
					처 리	절 차				
신청서 직	성	→		수 처	→		부 검토 및 혹	→	직불금	
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지 급 기 관 지 급 기 관 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 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 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 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 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 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 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							기 관 품질관리원) 			